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한국협회

가정연합 사회공헌단 활동 지침

제1조(지침 목적)

본 지침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한국 현장에서 참사랑을 실천하여 가정 회복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활동 취지)

사회공헌단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다.

① 선민 축복가정으로서 참사랑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된다.

② 현장에서 사회공헌의 기반을 형성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공헌 역량을 갖춘다.

③ 위하여 사는 삶의 실천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④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함께 돕는 지원 체계를 갖춘다.

⑤ 성실히 활동을 기록하고 홍보하여 가정연합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확산에 이바지한다.

제3조(명칭)

본 사회공헌단 명칭은 **"○○가정교회 사회공헌단"**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출범한 봉사단도 가정연합 사회공헌단을 함께 명기하며, 모든 봉사단과 봉사활동에는 사회공헌단 로고 및 BI 등을 함께 사용하여 일관성 있는 활동으로 발전시킨다.

제4조(조직)

① 사회공헌단은 교구 및 교회별로 두며, 각각 사회공헌단장(대표자)를 선임한다.

② 교구는 소속 교회 사회공헌단을 조직하여 가정연합 사회공헌 저변 확산에 노력한다.

제5조(단장 역할)

① 교구 사회공헌단 단장은 교구 사회공헌부장이, 교회 사회공헌단 단장은 공직자 또는 활동 리더 식구가 맡는다.

② 교구 단장은 교구 내 사회공헌 활동 전반을 관리하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현장 사회공헌 확산에 힘쓴다.

③ 교회 사회공헌단장은 활동 결과를 교구에 보고한다.

④ 단장은 자원봉사 등록·교육·안전을 실시한다.

제6조(모집 대상 및 등록)

① 사회공헌단 구성원은 교구 또는 교회 내 식구, 평화대사, 지역주민 등으로 한다.

② 가정연합 참사랑 가치 확산에 동의하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③ 등록을 원하는 자는 봉사자로 등록하고, 단장은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7조(봉사자의 권리와 의무)

① 봉사자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

② 봉사자는 활동 시간과 장소를 지키고,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와 기관 내부 정보를 발설하지 않는다.

③ 봉사자는 봉사 대상자를 존중하고, 종교나 정치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제8조(활동 분야)

봉사단은 아래와 같이 가정, 평화, 환경 분야 활동을 권장한다.

① 취약계층 돌봄 -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위기가정 지원 등

② 환경 보호 – 환경 정화,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생태 보전, 바자회, 환경 캠페인 등

③ 긴급 재난 구호 및 일손 돕기 등

④ 평화 증진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활동 등

⑤ 가정, 평화, 환경을 주제로 한 포럼 및 학술 활동 등

⑥ 그 밖에 공동체 성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제9조(활동 계획과 보고)

① 단장은 연간 또는 분기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② 활동 종료 후 참여 인원, 활동 내용, 시간 등을 즉시 기록·관리한다.

③ 본부는 이를 종합하여 사례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대내외에 적극 알림으로써 참사랑 실천 가치 확산에 최선을 다한다.

제10조(활동 지원과 재원)

① 봉사단 운영은 교구, 교회별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부는 현장 봉사단이 제안한 활동 계획을 검토해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후원이나 자체 마련 재원으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④ 외부 수입(회비, 후원금, 보조금)으로 운영한 활동은 결과(결산 내역, 활동 결과 등)를 게시하여 공개한다.
⑤ 모든 활동 경비는 증빙과 사용 내역을 보관하여 투명하게 운영 관리한다.

제11조(교육과 훈련)

① 봉사단은 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제반 교육을 실시한다.
② 위험이 따르는 활동에는 반드시 사전 안전교육을 한다.

제12조(안전과 보험)

① 봉사단은 활동 중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필요한 경우 단원의 안전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사례 관리)

① 봉사 활동 실적과 사례는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히 기록·관리한다.
② 사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4조(격려와 예우)

가정연합의 신뢰를 높이고, 참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우수 활동 봉사자와 현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표창하거나 격려하는 예우 행사를 마련할 수 있다.

제1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봉사단은 그 명의나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16조(강요 금지)

개인이나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지 아니하며 자발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탈퇴와 해촉)

① 봉사자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

② 봉사자가 지침을 어기거나 위법적인 행위, 봉사단의 명예를 해친 경우, 단장은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은 본부와 현장의 논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